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나11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소인 A

피고, 상고인 1. B

2. C

3. D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나1190 판결

판결선고 2003. 5.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2. 1. 16.'을 '2003. 1. 16.'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재산상속을 받은 자가 호적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편의에 따라 호적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와 사이에 그 상속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호적상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명의수탁자는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의수탁자와 그로부터 상속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소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행위 없이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와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위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어머니인 E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고서도 호적상 E의 친생자로 입적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망인의 어머니로서 호적상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 있던 원고의 외할머니인 F과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원고의 외삼촌인 G과 그의 처인 H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의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D에게 매도하여 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였던 F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 없이 위조된 계약서에 의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B와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피고 C, D은 위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바, 위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사실관계의 법률적 의미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기록상 F이 G와 H의 위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 C, D을 위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을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손지열